#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24

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 황정아 · 박지원 · 박용갑

허 영・김성회・주철현

장철민 • 이정헌 • 박해철

이용선 • 백승아 • 고민정

김 유·김성환·최민희

김남근 • 서미화 • 위성곤
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 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 정하고,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 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,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,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

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2(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정년 등) ① 항공 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 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
  - ②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소속 임직원(정년에 도달한 임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 대하여 정년 이후 일정나이,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③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다.
  -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근무형태, 근무여건 및 처우,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 ⑤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,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의 설치
 ·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62세,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64세, 2030년부터는 65세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l> <li>&lt;1 전 ≥</li> <li>제21조의2(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정년 등)</li> <li>①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</li> <li>②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소속 임직원(정년에 도달한 임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 대하여 정년 이후일정나이,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제도를실시할 수 있다.</li> <li>③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・조정하기 위하여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다.</li> <li>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 운영에 필</li> </ul>
<u> </u>

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근무형태, 근무여건 및 처우,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 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,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의 설치·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